

수원지방법원 2024. 10. 2 선고 2023가단602114 판결 [추심명령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 A

피고 B 주식회사

변론종결 2024. 9. 4.

판결선고 2024. 10. 2

주 문

1.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6. 3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D은 2020. 6. 30.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을 분양받고, 2023. 2. 15. 잔금을 완납하였다.

나. 원고는 ①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2020년 제65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23. 8. 23. 수원지방법원 2023타채3450호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(이하 '이 사건 청구권'이라 한다)을 압류하고, ② 2023. 9. 26. 수원지방법원 2023타채4315호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를 이 사건 아파트의 보관인으로 선임하고, '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계약의 기간종료 또는 해지 후의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'는 내용의 부동산 보관인 선임 및 등기이행명령을 받았으며, ③ 2024. 2. 29. 수원지방법원 2024타채106392호로 위 압류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았고(이하 '이 사건 추심명령'이라 한다), 위 추심명령은 2024. 3. 6.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.

다. 수원지방법원은 2024. 3. 28. 이 사건 아파트의 보관인을 집행관 F에서 집행관 C으로 경정하는 결정(수원지방법원 2024카경40)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1 내지 3, 6,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과 보관인 선임 및 소유권이전등기명령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. 6. 3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 외에도 여러 채권자들이 이 사건 청구권을 압류하여 압류가 경합 중이므로,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44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채권자가 이를 압류 및 추심하여 바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. 위 법률조항은 압류채권자와 경합하는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그 전제로 한다.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와 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보관인에게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해제라는 조건은 불필요하다.

따라서 이 사건 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경합되어 있더라도,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보관인에게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이원범

별지